

목포시 공고 2026-1088호

「중동사태 어업용 면세유 유가연동보조금 지원사업」 신청 공고

「중동사태 어업용 면세유 지원사업」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신청자를 모집 공고하오니, 사업 신청을 희망하는 어업인께서는 2026년 9월 4일까지 기한 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

2026. 8. 12.

목 포 시 장

1. 사업개요

○ 사 업 명 : 중동사태 어업용 면세유 유가연동보조금 지원사업

○ 사 업 비 : 96,000천원 (도비 38,400^{40%}, 시비 57,600^{60%})

※ 국제 정세에 따라 유가 안정되면 사업 종료

2. 사업내용

○ 지원대상 : **목포시에 주소지를 둔 어업인**으로서 면세유류카드 발급받은 연·근해어업 동력어선, 양식장 관리선(동력)

○ 지원내용

- ‘26년 4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어업용 면세휘발유를 사용한 어가에 어업용 면세휘발유 인상분 정액 지원(소급 적용)

○ 지원유종 및 단가

- 지원유종 : 어업인이 공급받은 어업용 면세유류 (휘발유)
- 지원단가 : 116.3원 / ℓ (수협중앙회 월별 면세유 공급가격에 따라 변동)

- {2026년 4월 어업용 면세휘발유 공급가격*(1,158.7원/ℓ) - ^{26년 3월 공급가격} 771원/ℓ} × ^{보조율} 30% = 116.3원/ℓ
- *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(이하 "수협중앙회")가 월별로 정하는 어업용 면세유 공급가격
- 공급량은 보조금 지원대상(어업인)이 수산업협동조합 등으로부터 공급받은 양으로 수협의 유류구매사업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정보를 기준으로 하며, 천원단위 미만 절사 지급

○ 제외대상

- 특별시내 시·군에 거주하고 있지 아니한 자(주민등록상 주소지 기준)
- 최근 2년 이내(직전 연도 말 기준)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을 포기, 허위·거짓으로 신청하거나,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
- 지원기간 동안 수산관계법령 등 위반으로 행정처분 받은 사실이 있는 자(해당어선에 한함, 경고 처분 받은 자는 지원 가능)
- 수산관계법령 및 「낙시 관리 및 육성법」, 「어선법」 위반 과태료 및 과징금, 수산자원조성금을 납부하지 않은 자
- 「어선법」 제21조에 따라 어선 검사를 받지 않은 어선, 「어선법 시행규칙」 제49조에 따라 일정 기간 운항하지 아니할 목적으로 해당 어선을 계류한 어선
- 사업신청서를 제출하지 않는 자는 지원 제외

3. 신청기간 : 2026. 8. 12.(수) ~ 9. 4.(금)

- 주소지 관할 시·군에 신청

(예: 선적항 목포, 주민등록상 주소 무안 ⇒ 무안군 신청)

4. 제출서류

- 사업 신청서 1부(붙임)
- 어업허가증(허가내역서) 또는 양식어업 면허증(행사계약서 등) 사본
- 신분증 및 통장사본 각 1부.
- 면세유류카드 사본

5. 접수장소 및 문의처

- 목포시청 수산산업과 어업지원팀(☎ 061-270-3411)

6. 지급시기

- 예산확정 후 지급 (※ 별도 문자 안내)

7. 유의사항

- 제출서류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한 경우 관련 법에 의해 보조금 환수 조치함
- 이 공고는 목포시 홈페이지(<http://www.mokpo.go.kr>) 열린시정-고시/공고-고시/공고에 게재되어 있으니 참고 바람
- 공고내용 해석에 이견이 있거나 명시되지 않은 기타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시의 해석에 따라야 함

붙임 : 중동사태 어업용 면세유 지원사업 신청서 1부. 끝.

중동사태 어업용 면세유 지원사업 신청서

신청인	성명(법인명)		생년월일(법인번호)	
	주소 (사업장 위치)			
	연락처		면 세 유 카 드 금융기관 계좌번호	
	어업기반	(예시) 00호(00호가 2021-1호 0통), 00호(00양식면허 2021-1호 00통)		

제출서류	1. 어업하기증(허가내역서) 또는 양식어업 면허증(행사계약서 등) 사본 2. 신분증 및 통장사본 3. 면세유류카드 사본
------	--

상기 본인은 중동 사태 어업인 면세유 지원사업의 제반 규정을 준수하면서 본 사업의 보조금 지원을 받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.

2026년 월 일

신청인 : (서명 또는 인)

목포시장 귀하

개인(신용)정보 조회·제공 동의서

상기 본인은「어업용 면세유류 구입비 지원사업」의 보조금을 지원받기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에 따라 개인정보 조회·제공에 대하여 동의합니다.

- 조회·제공 목적 : 어업용 면세유류 구입비 지원사업 보조금 지급
- 개인정보 조회·제공 대상기관 : 구매사업정보시스템, 전남광주통합특별시, 동의자 거주 시·군
- 조회·제공할 항목 : 주소, 성명, 생년월일, 연락처, 면세유 사용실적, 면세유류구입카드의 금융기관 계좌번호
- 조회·제공기간 : 동의일로부터 당해 지원사업 종료시점까지, 단 신용정보 조회·제공 효력기간 종료 후에는 민원처리 및 법령상 의무이행만을 위하여 보유·이용
-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, 거부시 면세유 보조금 지급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

* 동의자의 개인정보 관련 내용은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(수협구매사업정보시스템)에 제공되며 동의한 개인정보는 어업용 면세유류지원사업 관련 모든 업무에 사용함을 알려드립니다.

본인은 본 동의서 내용을 이해하였으며, 조회·제공할 항목의 개인(신용) 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. (동의함 ☐ 동의하지 않음☐)

정보제공 동의자 성 명 : (서명 또는 인)

생년월일 :

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귀중

담당자 확인	소 속	목포시 수산산업과	성 명	(서명 또는 인)
--------	-----	-----------	-----	-----------

※ 「어업면세유 공급요령」 등 관계법령에 따라 어업용 면세유류가 회수된 경우에는 본 특별시비지원사업이 중단됩니다.
※ 개인(신용)정보 조회·제공 동의서 작성시 밑줄 친 정보제공 “동의함” “동의하지 않음” 중 1곳에 V또는 O로 표시, 동의하지 않고 보조금 지원을 받으려 할 경우는 본인이 직접 시군(읍면)을 방문하여 관련 정보를 담당공무원에게 제출, 사업신청인과 정보제공 동의자는 동일인이여야 하며 서명은 “도장 날인 또는 서명” 모두 가능합니다.
※ “담당자 확인” 란은 개인정보 동의서를 받는 시군(읍면) 담당공무원이 서명하여야 함.